

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김지훈(민) 의원 대표발의]

검토보고서

2024. 3. 13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김지훈(민)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민원 심의 신청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, 각종 용어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원 심의 신청 주체 추가 (안 제9조)

: 처리주무부서 → 처리주무부서, 민원총괄부서의 장

나. 법령상 표현 일원화(안 제9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민원담당관

라. 입법예고 : 2024. 3. 7. ~ 3. 12.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, 조례에 사용된 각종 용어들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용어로 일원화하는 안건으로서.

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주체를 기존의 처리주무부서에서 '처리주무부서 및 민원총괄부서'로 확대하여 규정하였고,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 결정서 등으로 명시되어 있던 용어를 법령에 맞게 '심의 결과'로 통일하였습니다.

본 조례의 개정으로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함께 조정 신청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참고자료

※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경기도 주요 시 현황

-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주체

· 민원총괄부서: 구리시, 안양시, 화성시, 하남시 등

· 처리주무부서: 남양주시, 안산시, 의정부시 등

· 처리주무부서 + 민원총괄부서 : 수원시

〈표〉 경기도 타 지자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

| 연 번 | 지자체 | 민원조정 접수 및 상정 | 민원 검토 | 처분결정 |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남양주시 | 처리주무부서 | 민원총괄부서(민원담당관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민원담당관) 조정위원회 | |
| 2 | 구리시 | 민원총괄부서(민원봉사과) | 민원총괄부서(민원봉사과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민원봉사과) 조정위원회 | |
| 3 | 의정부시 | 민원총괄부서(민원여권과) | 민원총괄부서(민원여권과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민원여권과) 조정위원회 | |
| 4 | 가평군 | 민원총괄부서(민원지적과) | 민원총괄부서(민원지적과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민원지적과) 조정위원회 | |
| 5 | 하남시 | 민원총괄부서(민원여권과) | 민원총괄부서(민원여권과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민원여권과) 조정위원회 | |
| 6 | 수원시 | 민원총괄부서(통합민원팀), 처리주무부서 | 민원총괄부서(통합민원팀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통합민원팀) 조정위원회 | |
| 7 | 안산시 | 처리주무부서 | 민원총괄부서(시민협력관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시민협력관) 조정위원회 | |
| 8 | 안양시 | 처리주무부서 | 민원총괄부서(시민봉사과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시민봉사과) 조정위원회 | |
| 9 | 화성시 | 처리주무부서 | 민원총괄부서(민원봉사과) 조정위원회 | 민원총괄부서(민원봉사과) 조정위원회 | |

붙임1

관계법령

☑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34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1. 장기 미해결 민원,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
- 2.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
- 3.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8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- 1.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
- 2.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
- 3.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
- 4.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·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"민원조정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
- 2.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
- 3.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
-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,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, 관계부서의 장, 감사부서의 장,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

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·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.

-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39조(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)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.

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- 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, 이해관계인 등 에게는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

- 2024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산(4,770천원) 기확보하여 집행 예정

4. 작성자

민원담당관 김선미

부서: 민원담당관 정책: 주민 행정 편의 도모(일반공공행정/일반행정) 다와: 그개마족 해정사비스 제고

| 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 | | | 예산액 (경정액) | 전년도예산액 (기정액) | 비교증감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○가족관계등록신고 홍보· | 물품 구입 25,000원*1,900건 | | 47,500 | | |
| | | = | 47,500 | | |
| ○가족관계등록신고 홍보물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(읍·면 11개 관서) | | | 87,724 | | |
| | | = | 87,724 | | |
| 시민우선행정서비스 지원 | | | 4,770 | 4,770 | 1 |
| 201 일반운영비 | | | 4,770 | 4,770 | i i |
| 01 사무관리비 | | | 4,770 | 4,770 | 4 |
| 본예산 | | | 4,770 | 4,770 | |
| ○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| | | 2,670 | | |
| -참석수당 | 100,000원*4명*6회 | | 2,400 | | |
| -실비 | 45,000원*1명*6회 | | 270 | | |
| ○위원회 속기료 | 350,000원+6회 | | 2,100 | | |